

「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6년 4월 7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6년 4월 8일

라. 상정일자: 2026년 4월 16일

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선산출장소장 박은희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에코랜드 내 「어드벤처 트리타워」 신설에 따라 이용료 규정 등 조례를 정비하여 이용객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1) 시설의 신설에 따른 정의, 현황 및 이용료 등 규정 정비(안 제3조, 제9조, 안 별표 1~5)
- 2) 용어, 띄어쓰기 및 인용사항 정비(안 제3조~제5조, 제9조~제16조, 안 별표 3~5)

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
- 2)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에코랜드(산동읍 인덕리 산 5-1번지 일원) 내 ‘어드벤처 트리타워’의 신설에 따른 이용료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3조, 별표 1 등에서 신규 시설인 ‘어드벤처 트리타워’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시설 운영·관리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음.
- 안 별표 1 ~ 5에서는 신규 시설에 따른 명칭과 운영 현황을 현행화하고, 이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정비하였음.
- 다만, 안 별표 3의 ‘어드벤처 트리타워 이용료’는 타 시·군 유사 시설의 이용료 비교, 관내 시민 감면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나, 적정 요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- 신규 시설 운영에 따른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, 관련 부서에서는 안전요원 배치, 이용수칙 수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

- 안 제15조제1항의 인용 조례명이 개정 전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는바, 현행 조례명에 맞춰 정비하여야 함.

6. 소수의견의 요지:

- 자치법규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, 조례의 본질적 내용과 관련이 없는 단순 띄어쓰기나 용어 정비 위주의 개정은 전체 조례 검토를 통한 일괄 검증 및 정비할 필요가 있음.
- 신규 시설 확충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, ‘구미에코랜드’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.
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